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순직자의 유형을 3개에서 2개로 재정비 등〉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90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순직자의 유형을 3개에서 2개로 재정비	3
2.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 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조문 삭제	8
※ 참고자료 1: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이래 심사결과	12
※ 참고자료 2: 순직자 분류기준표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6.
3. 회부연월일 : 2026.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I·II·III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 I 형은 그 업무의 성격과 보상 수준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순직 II·III형은 ‘직무나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순직 II·III형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 I 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II 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순직자의 유형을 3개에서 2개로 재정비

- 개정안은 순직자의 유형을 현행 I·II·III형(3단계 체제)에서 I·II형(2단계 체제)으로 통합하여 순직 구분 기준을 간명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제2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순직자	2. -----
가. 순직 I형: 타의 귀감이 되는 <u>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u>	가. 순직 I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u>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u>
나. 순직 II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u>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u>	나. 순직 II형: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u>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u>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삭 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 현행 법령에서는 순직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순직 I 형과 II·III형을 구분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순직 II 형과 III형을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202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은 그 자체로 국가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개별 직무의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순직 II 형·순직 III형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를 권고¹⁾한 바 있음.

1)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 순직 예외 사유는 축소, 사망위로금은 확대해야

【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 순직 II 형·순직 III형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 국방부가 순직 II 형과 III형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은 사망한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므로, 그중 어떤 직무나 활동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 또한, 「군인사법」 개정으로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

또한, 제안이유에 의하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순직 I 형은 그 업무의 성격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소방공무원 등 타 직종과 비교할 때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²⁾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순직 유형을 2개로 단순화하여,

순직 I 형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순직 II 형은 그 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재구성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순직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경찰·소방 등 타

(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단서조항에서 순직 예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의무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비율은 개정 「군인사법」 시행(2022. 7. 5.)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순직 II 형과 순직 III 형을 통합하는 한편, 같은 법 제54조의2 제2항이 명시상부한 순직 인정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살인·강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죄를 범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를 주요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등 순직 예외 사유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직종의 위험직무순직 분류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순직Ⅱ형과 Ⅲ형을 구분하는 기준인 ‘국가 수호 등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추상적이고 해석상 불명확하여 분쟁이 반복되는 문제³⁾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현행 순직 유형은 순직Ⅰ형과 Ⅱ·Ⅲ형을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순직Ⅱ형과 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등 순직 유형의 분류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순직 유형을 통합할 경우 위험도 및 작전 수행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 사례가 동일한 순직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상위 유형에 해당 하던 순직까지 동일 범주로 포함될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순직의 성격이나 공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순직 유형별 보상 수준이 현행 제도에서 차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유형 통합에 따른 보상체계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순직Ⅲ형’으로 결정된 故 박진수 중위를 ‘순직Ⅱ형’으로 재분류하도록 촉구하는 등 내용의 「故 박진수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군의 구조적 책임 규명 및 순직 재분류·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제220025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순직유형별 군 사망보상금 비교]

('26년 3월 기준)

순직 I 형	순직 II 형	순직 III 형
약 2억 5,695만원	약 1억 3,704만원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순직유형을 ‘3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인정범위가 협소한 순직 I 형의 요건을 공무원(경찰·소방 등)의 ‘위험직무순직’ 범위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유형구분(순직 II·III형)에 따른 유가족의 차별감 해소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가족 대상 예우를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조문 삭제

- ☐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u>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u>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② --- ----- ----- ----- <u>위법행위</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⁴⁾에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음.

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최근 10년간 군인의 사망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⁵⁾.

[2016~2025.9. 군 사망사고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망	고의에 의한 사망		비율
		고의에 의한 사망	비율	
전체	722	501	69.4	
육군	458	354	77.3	
해군	112	54	48.2	
공군	118	79	66.9	
해병대	34	14	41.2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군 의무복무의 강제성과 군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 중 일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사망 원인이 고의에 의한 사망(자살)이라 하더라도, 군 복무 과정에서의 직무상 스트레스, 부대 환경, 인간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에 의한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5)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통전공사상 심사결과, 중앙전공사상 심사결과, 중앙전공사상 재심사 결과는 참고자료 참조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의에 의한 사망(자살)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현행법령으로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⁶⁾,

고의에 의한 사망 중에는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순수히 개인적 사유에 기인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개정안과 같이 예외규정을 삭제할 경우, 종전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던 순수히 개인적 사유에 기인하는 자해사망 등의 사례가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순직 인정 범위의 확대에 따른 군 사망보상금 지급 등 제도 운영상 부담 및 순수히 개인적 이유로 자해사망한 경우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현충원에 안장⁷⁾

6)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중 일부

순직 Ⅲ형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하여야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참고자료 1: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이래 심사결과

1.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 심사결과('15.9.23. 군인사법 개정⁸⁾ 후)

구 분	보통전공사상 심사결과				중앙전공사상 심사결과				
	심사 건수	전사 /순직	기각	순직률 (%)	심사 건수	전사 /순직	기각	보류	순직률 (%)
계	1245	767	478	61.6	2152	1907	184	61	88.6
장 교	195	132	63	67.7	167	130	32	5	77.8
준·부사관	633	379	254	59.9	289	234	46	9	81.0
병	417	256	161	61.4	1696	1543	106	47	91.0

2. 중앙전공사상 재심사 결과('15.9.23. 군인사법 개정 후)

구 분		일반사망 → 순직 요청				
		심사 대상자	순직	기각	보류	순직률(%)
계		70	38	32	1	54.3
간부	소계	92	51	41	1	55.4
	영관이상	4	2	2	-	50
	대위	3	-	3	-	0
	중소위	5	3	2	-	60
	준위/상원사	3	2	1	-	66.7
	중하사	17	10	6	1	58.8
병		60	34	26	-	56.7

8) 「군인사법」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 6. 생략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참고자료 2: 순직자 분류기준표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6. 30.>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I 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Ⅱ형	2-2-1	순직 I 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 또는 2-2-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 유격훈련, 주특기 훈련, 그 밖에 유사시(有事時)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4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6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2-7	2-2-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Ⅲ형	2-3-1	순직 I 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이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비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